##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97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조인철·장종태·오세희

박지원 • 이개호 • 문진석

주철현 · 정진욱 · 이해민

안도걸 • 박용갑 • 위성곤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투자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임. 그러나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여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는 약 50%에 불과하여 미흡한 실정임.

사업화 성공률은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여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의9 신설).

법률 제 호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추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9(중소기업 협동연구개
	발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들
	의 협동연구개발을 통하여 중
	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
	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
	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u>야 한다.</u>